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나894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이필용, 오승준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형진

변 론 종 결 2022. 1. 13.

판 결 선 고 2022. 2. 10.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20가단5039088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부대항소를 통하여 확장된 청구 포함)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표 ‘증여일시’란 기재 각 해당일에 같은 표 ‘증여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203,625,31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3,625,3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으면서, 이 법원에서 부대항소의 방식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부분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5, 6, 11, 12행의 각 ‘190,211,170원’을 모두 ‘203,625,313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C의 채무초과 여부

1)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C는 적극재산으로 D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132,511,522원, 용인시에 대한 국세환급금 채권 65,978,400원,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 110,600,000원, K에 대한 대여금채권 5,000,000원, 증권계좌 잔고 106,937,346원, 시가 합계 30,573,536원 상당의 토지(강원도 평창군 M 등 5필지) 합계 451,600,804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갑 제3, 6 내지 12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2014. 1. 17.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J이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로부터 35억 원을 차용할 때 그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위 차용금의 원리금이 3,988,465,747원에 달하였던 사실, 한편 J이 위 차용금의 담보로 N에게 J 소유의 성남 수정구 O 외 9필지에 채권최고액 45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인 무자력 판단에 있어 채무자의 소극재산은 실질적으로 변제 의무를 지는 채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연대보증채무인 경우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연대보증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그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우선변제권으로 채권이 확보되는 범위에서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변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C의 N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N가 주채무자 J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범위에서 실질적인 소극재산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이 차용원리금이 산술적으로 3,988,465,747원에 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전부 C의 소극재산으로 평가하여 C가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위와 달리 C가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가정하고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와 C가 모자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증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8, 12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P의 공동상속인인 처 C, 자녀 피고, F, G, H은 2013. 11. 1.경 상속재산인 서울 서초구 I 토지 및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I 부동산'이라 한다)을 C 8/16, 피고 4/16, F 2/16, G, H 각 1/16 지분으로 상속하되,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는 C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해두고 추후 위 부동산이 매각될 경우 그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 피고의 지분인 4/16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 이에 따라 I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3. 11. 5. C 앞으로 12/16(C 자신의 지분 8/16 + 피고의 지분 4/16), F 앞으로 2/16, G, H 앞으로 각 1/16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C, F, G, H은 2015. 3. 30. 주식회사 Q에게 I 부동산을 2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계약 당일, 중도금은 2015. 5. 8., 잔금은 2015. 6. 30.에 지급받기로 한 사실, 매도대금에서 P의 R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무 189,100,000원, 다가구주택(총 12가구)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약 7억 원, 1) 양도소득세액 105,861,609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이 10억 원 내외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I 부동산의 매도잔금까지 지급받은 직후에 이루어진 점, 그 송금액 합계가 매매대금에서 채무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피고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10억 원의 4/16인 2억 5,000만 원)과 근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상속재산분할협약에 따른 약정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그 변제가 C와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증여에 따른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부대항소를 통하여 확장된 청구 포함)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정인, 판사 김현석, 판사 당우증

[별지]

사해행위 취소청구 증여계약 내역

증여일시	증여금 (원)	(증여자) 계좌번호	피고(수증자) 계좌번호
2015.7.9.	32,150,000		
2015.7.10.	36,200,000		
2015.8.17.	14,000,000		
2015.8.25.	50,000,000		
2015.8.25.	50,000,000		
2015.9.1.	30,000,000		
합 계	212,350,000		

1) 위 다가구주택 S호에 관한 2015. 2. 4.자 임대차계약서(을 제13호증의 1)의 특약사항에 위 임대차계약 당시 전체 임대차보증금이 약 7억 원 정도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